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
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권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4.

발 의 자 : 권철승 · 이상식 · 윤준병
손명수 · 박균택 · 한민수
임호선 · 이연희 · 임미애
이정문 · 박상혁 · 김남희
박해철 · 박지원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.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(Platform)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
다만, 금융감독원은 「대부업법」 및 「채권추심법」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 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기능이 부재한 상황임. 특히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정보, 불법사금융

근절제도 시행 및 자금추적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「대부업법」 및 「채권추심법」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,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의 3).

법률 제 호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1항 중 “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”를 “범죄,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3(금융감독원 직원) ①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<u>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</u> 직무를 수행하고,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 1. ~ 2. (생략) ② (생략)	제7조의3(금융감독원 직원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범죄,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